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8. 7. 14.

제안자 : 최광옥의원 외

수정이유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26조 사용료 중 안 별표2의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사용료 징수금액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1. 안 『별표2』의 사용료 징수금액 중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의 학생문화원 공연장 징수액을 오전 13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후 16만원에서 15만원으로, 야간 20만원에서 18만원으로 조정함.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6조의 『별표 2』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기 관 명	사 용 구 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 고
		오전	오후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20,000원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안 제26조(사용료) 관련

《개정안》

【별표 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30,000원	
		오후	160,000원	
		야간	200,000원	



《수정안》

【별표 2】

기관명	사용구분	징수액 (기준 시간내)		비고
충청북도 학생교육 문화원	학생문화원 공연장	오전	120,000원	
		오후	150,000원	
		야간	180,000원	